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4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

전형진 편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 시리즈는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상황에서 중국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그동안 연구원이 발행한 중국농업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관련 주요 문건 및 자료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12년 중국농업시리즈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교역 동향, 농산물 무역 정책과 제도, 농업구조(생산·경영·유통구조),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주요 농업·농촌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목 차

1.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개념 ····· 1

2. 친환경농식품 관련 정책 개요 ····· 5

2.1. 정책 추진 배경 ····· 5

2.2. 정책의 전개 및 주요 내용 ····· 11

3.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 ····· 31

3.1. 법령 체계 ····· 31

3.2. 표준(standards) 체계 ····· 33

3.3. 인증 기관 ····· 39

3.4. 인증 절차 ····· 44

3.5. 인증 비용 ····· 48

3.6. 인증 표지 ····· 51

4. 비교 및 시사점 ····· 58

부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 중국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 목록 ····· 65

표 목 차

표 1.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념 비교 ····· 2
표 2. AA급 녹색식품과 A급 녹색식품의 차이점 ····· 3
표 3. 중국의 시기별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목표와 주요 내용 ····· 10
표 4.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정책 관련 주요 문건 목록 ····· 17
표 5.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주요 추진 조치 ····· 22
표 6. 중국의 '5종2횡(五縱二橫)'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개요 ····· 25
표 7.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관련 주요 추진 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 29
표 8.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 관련 법령 체계 비교 ····· 32
표 9.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 표준체계 비교 ····· 33
표 10.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표준체계 ····· 34
표 11.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조직 체계 ····· 40
표 12.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의 처리시한 규정 ····· 45
표 13.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증 비용 비교 ····· 51
표 14. 주요 국가별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비교 ····· 60

그림목차

그림 1. 농식품 안전성 기준에 의한 중국 친환경농식품 구분 ····· 4
그림 2. 중국의 도시 및 농촌 가구 1인당 연간 평균소득 변화 추이(1978~2010년) ·· 9
그림 3. 중국의 '5종2횡(五縱二橫)'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분포도 ····· 26
그림 4. 중국의 녹색시장 인증 표지 ····· 27
그림 5. 중국의 녹색식품 표준체계 ····· 36
그림 6. 무공해농산물 인증조직 체계 ····· 41
그림 7. 무공해농산물의 통합 인증 절차 ····· 45
그림 8. 중국의 녹색식품 인증 절차 ····· 46
그림 9.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 절차(COFCC 예) ····· 47
그림 10.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의 인증 표지 ····· 52
그림 11. 녹색식품 인증표지의 4가지 형식(AA급 예) ····· 53
그림 12. 녹색식품 농자재의 인증표지 ····· 54
그림 13. 중국의 유기산품 및 유기전환산품 인증표지 ····· 56
그림 14. 중국 유기산품 인증기관의 유기산품 인증 표지 예 ····· 56
그림 15. 중국과 한국의 친환경농업 발전 경험 비교 ····· 62

1.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개념

○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2011.7.21 일부 개정)에 의해 “친환경농업”[1]과 “친환경농산물”[2]이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함(제16조 제1항).

- 또한 「식품산업진흥법」(2012.6.1 일부 개정)에 의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유기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5항).

○ 중국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같이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하면서 법률적으로도 개념이 정의된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통칭하여 친환경농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1) “친환경농업(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칭함)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됨(「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제1항).

2) “친환경농산물(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정의됨(「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제2항).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식품 개념과 유사한 중국의 농식품은 무공해농산물(無公害農産品), 녹색식품(綠色食品), 유기식품(有機食品)임.

○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식품을 제조·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농산물 형태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과 가공품 형태의 유기가공식품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각각 독자적인 법규 또는 표준에 의거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다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모두 신선농산물 형태와 가공품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는 않음.

표 1.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념 비교

구 분		개념 정의
유기식품	유기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국가표준 GB/T19630-2005)
	유기 전환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이전 기간인 전환기(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국가표준 GB/T 19630-2005)
녹색식품	A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화학 합성의 비료,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 식품첨가제 및 기타 환경과 신체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유기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며,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녹색식품 농자재 사용준칙과 생산조작 규정의 요구에 의거하여 엄격히 화학합성 농자재의 사용량을 제한하며,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무공해농산물		"산지환경, 생산과정, 농산물 품질이 무공해농산물 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며, 인증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획득하고 무공해농산물 인증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단순가공한 식용 농축수산물"([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제2조)

주: [無公害農産品管理辦法]; GB/T19630-2005(有機産品); NY/T 391-2000(綠色食品産地環境技術條件)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은 각자의 법규 또는 표준에 근거하여 개념이 상이하게 정의되지만 생산과정에서 각자의 표준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뿐만아니라 인증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획득하고 인증표지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

○ 중국의 유기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화학합성 농업투입재나 식품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과 개념상 차이가 없음.

- 중국에서 유기식품 인증의 근거가 되는 유기식품 표준은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표 2. AA급 녹색식품과 A급 녹색식품의 차이점

평가 체계	AA급 녹색식품	A급 녹색식품
환경 평가	• 단일 지수법으로 평가 • 각 평가항목의 수치가 관련 표준을 초과하지 않음	• 종합지수법으로 평가 • 각 평가항목 환경검사의 종합오염지수가 1을 초과하지 않음
생산과정	화학합성의 비료, 농약 및 식품첨가제 사용 금지	제한된 종류의 화학합성물질을 제한된 양, 제한된 기간, 제한된 방법으로 사용 허용
생산품	각종 화학합성 농약 및 식품첨가제 미검출	•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화학합성물질의 잔류량이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2/1 이하 •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미검출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農産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産品質量安全網 (http://www.aqsc.gov.cn).

○ 중국의 녹색식품은 국제표준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자체적인 표준이 보다 강조된 국내표준임.

- 녹색식품은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A급과 일절 사용을 금지하는 AA급으로 구분됨.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AA급 녹색식품은 유기식품과 동일시 됨.
- 화학합성 농업투입재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중국의 A급 녹색식품은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무농약농산물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

○ 중국의 무공해농산물은 안전성 측면에서 시장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농식품임. 일반 농식품과 비교하여 생산과정에서 산지환경, 화학합성 농약 및 비료의 사용 제한 등 준수해야 할 표준이 있다는 점, 인증을 획득하고 생산품에 인증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림 1. 농식품 안전성 기준에 의한 중국 친환경농식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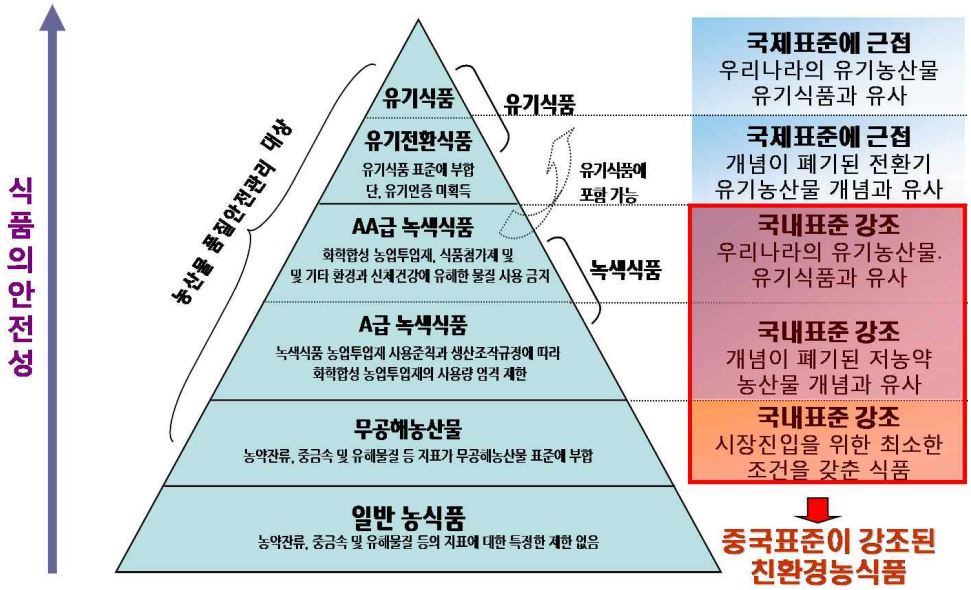

2. 친환경농식품 관련 정책 개요

2.1. 정책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방향 모색

○ 전세계 경지면적의 약 7%로 전세계 인구의 약 1/4를 부양해야 하는 커다란 인구 압력과 식량 공급 사이의 모순이 상존하는 중국에서 농업의 성장과 발전 문제는 역사 이래 중요한 화두의 하나임.

-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농업은 거대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와 함께 경제사회의 각 발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 농업도 생태·자원 환경의 보호와 경제와 생태 간 양성순환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받고 있음.

○ 중국 농업은 1980년대 고속성장 국면을 지나 1990년대 들어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원과 생태환경 측면에서 경지면적 감소, 경지의 비옥도 저하, 수토유실 심화, 사막화면적 확대, 초원면적 감소, 환경오염 심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성장은 투입 요소의 증투를 통한 조방적(extensive) 성장방식에 크게 의존하였음. 특히 산출증대 효과가 큰 화학

비료와 농약 등 현대적 투입요소의 대량 투입에 따른 농업분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또한 공업화의 진전으로 폐가스, 폐수, 폐찌꺼기 등 이른바 '3폐(三廢)'가 대량 방출되어 경지가 오염되고, 오염된 농축산물의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음.

○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압력과 생태환경의 악화는 중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임. 농업성장 이론이나 선진국의 농업성장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농업도 이제 투입요소의 증투를 통한 조방적 방식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농업성장 방식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추구, 웰빙소비 수요 확대

○ 중국 농업의 성장 단계로 보면 1990년대는 농산물의 단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이른바 '원바오(溫飽)'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에 해당함.

○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관념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져 우수품종, 고영양, 입맛이 좋은 농산물 선호
- 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식품첨가제, 방부제, 항산화제, 인공합성색소를 남용한 식품 배격

- 위생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져 식품의 잔류농약 여부, 중금속 오염 여부, 세균의 기준치 초과 여부가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부상
- 제품의 포장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져 식품 구매시 포장의 미관뿐만 아니라 재질이 식품 오염을 유발하는지 여부도 고려

○ 1990년대 이후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소비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웰빙에 대한 니즈(needs)가 형성되어 친환경제품을 선호하는 녹색소비가 확산되는 추세임. 중국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수요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였음.

❑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등 무역장벽의 회피 및 농산물 수출 확대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농식품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주요 수입국들의 규제가 강화되어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 이른바 '녹색무역장벽'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 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부상하였음.

○ 국제무역에서 전통적인 관세장벽은 점차 감소하고 기술표준, 환경표지, 동물복지 등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농식품 무역과 관련한 기술적 무역장벽은 주로 식품 중 잔류농약 및 식품첨가제와 관련된 기준임.
- 실례로 중국산 농식품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2006년 5월 29일부터

농약, 수의약 및 식품첨가제 등 유해물질의 잔류에 대해 엄격한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여 중국의 농식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웰빙소비 관념과 방식이 부상함에 따라 WTO도 점차 엄격하고 복잡한 환경표준, 환경검역 및 환경관리감독제도를 적용하여 무역상품의 생산, 운송, 저장 및 판매의 전과정이 반드시 국제적으로 통일되거나 공인된 표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임.
  -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외무역 영역에서 환경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품과 그 제조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추세임.

○ 중국은 자국산 농식품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로 인해 농식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국산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을 확대하여 수입국의 위생검사검역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녹색무역장벽'을 회피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농촌가구 소득 증대 및 농업구조 조정

○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도시개혁에 앞서 농촌개혁이 선행된 까닭에 농촌가구 1인당 소득증가율이 도시가구의 1인당 소득증가율을 능가하였음.[3] 결과적으로 도농 간 소득비율은 1978년 2.57:1에서 1985년 1.86:1로

축소되었음.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촌가구의 소득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져 1990년 2.20:1이었던 도농 간 소득비율이 2010년에는 3.23:1으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그림 2. 중국의 도시 및 농촌 가구 1인당 연간 평균소득 변화 추이(1978~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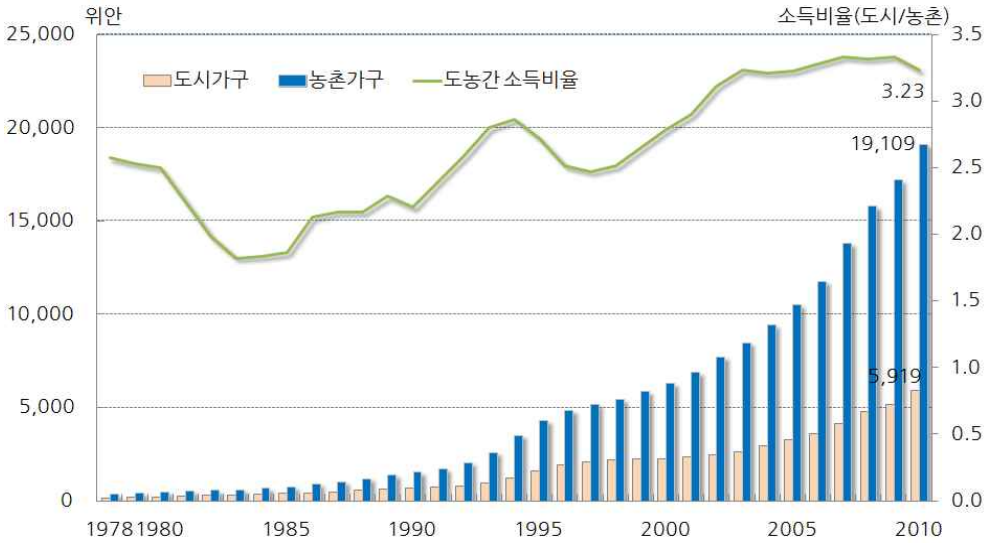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司 編.「2011中國統計年鑒」

○ 2000년대 들어 도농 간 소득격차의 지속적인 확대는 2004년 출범한 후진타오 정부의 국정 목표인 조화사회(和諧社會)와 '샤오캉(少康)사회' 건설을 저해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하였음.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2004년, 2008년, 2009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농촌가구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음.

---

3) 중국은 농가를 포함하는 농촌가구의 1인당 소득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표 3. 중국의 시기별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목표와 주요 내용

구 분	정책 목표와 주요 내용
개혁개방 이후	■ 주요 문건 • [농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약간문제의 결정關於加快農業發展若幹問題的決定](1979.9.28,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통과) • [국가농업위원회 〈농촌의 경영다양화 적극 발전에 관한 보고〉 하달轉發〈關於積極發展農村多種經營的報告〉](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 1981.3.30) ■ 구조조정의 목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확립 및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작부체계 조정 ■ 주요 내용 • 농가토지도급경영제와 시장화 개혁 추진 • 국가의 식량 등 농산물 계획수매 범위 축소 및 1985년까지 계획수매제도 폐지 →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기초적 역할 발휘 • 개혁개방 이전의 단일한 농업생산구조 조정: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농업구조, 특히 생산구조(작부체계)의 조정 → 식량작물 및 경제작물의 동시 발전, 재배업·임업·축산업·어업의 동시 발전 추구
1990년대 초반 이후	■ 주요 문건 •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농업의 발전에 관한 결정關於發展高產優質高效農業的決定](국무원, 國發[1992]56호, 1992.9.25) ■ 농업구조조정의 목표: 1980년대 양적성장을 토대로 총량 증대, 품질 제고 ■ 주요 내용 • 농산물의 상품화.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농업생산구조의 조정 및 업그레이드 • 유통을 중심으로 유통·가공·생산 일체화 경영체제 확립 •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농업의 발전 • 농업표준체계 및 검사체계 확립. 농업에 대한 투입 확대 •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농업의 생산조건 개선. 농업부문 대외개방 확대 •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농업 심사제도 확립
1990년대 말 이후	■ 주요 문건 • [농업·농촌업무의 약간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關於農業農村工作若幹重大問題的決定](1998.10.14,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통과) • [2001년 농업·농촌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關於做好2001年農業和農村工作的意見](공산당중앙위원회·국무원, 中發(2001)2호, 2001.1.11) •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약간 정책에 관한 의견關於促進農民增加收入若幹政策意見](공산당중앙위원회·국무원, 中發(2004)1호, 2003.12.31) ■ 농업구조조정의 목표: 농산물의 수급균형 유지 및 농산물 잉여 축적의 기초 위에서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가운데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한 전략적 구조조정 ■ 주요 내용 • 품질제고와 수익증대를 핵심 목표로 하여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품종 및 품질 고급화, 비교우위에 기초한 작물의 지역배치 및 가공률 제고 • 식량생산능력의 보호 및 향상을 전제로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 안전성 요구에 따라 집약화, 산업화 촉진 → 농민소득 증대 촉진 •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작물의 생산지역 배치 조정 → 구역화 • 농업기술 보급, 품질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 농업소득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고부가가치의 생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음.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식량생산능력의 보호 및 향상을 전제로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 안전성을 추구하고 농업내부의 소득증대 잠재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업구조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대표하는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산업의 발전은 농촌가구 소득증대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음.

○ 노동집약형 농산물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농자재의 투입이 적은 반면 상품가격이 높아 대량의 과잉노동력이 존재하는 중국 농촌의 취업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오염이 적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서부지역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로 적극 육성하고 있음.

2.2. 정책의 전개 및 주요 내용

❑ 정책의 도입 과정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녹색식품임. 국제적으로 유기농업운동이 조명을 받고 있던 대외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농업부 농간사(農墾司)는 1989년 농간계통(農墾系統)[4] 내에서 '오

염되지 않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녹색식품으로 명명)'의 생산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1990년 5월 15일 제1차 '전국 녹색식품 업무회의(綠色食品工作會議)'가 개최됨으로써 정책적으로 녹색식품 육성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중국의 농간계통 내 정책사업으로 출발한 녹색식품 육성사업은 1995년 5월과 10월 천진시에서 각각 개최된 '전국 녹색식품 업무회의'와 '녹색식품 선전·전시판매회(綠色食品宣傳展銷會)'를 계기로 농간계통을 넘어 중국 농업부문 전체로 확대 추진되었음.

○ 농업부는 녹색식품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90년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中國綠色食品發展中心, CGFDC; 1992.11.5 정식 설립 비준)을 설립하고, 전국의 성(자치구·직할시), 시, 현 등 지방정부에는 녹색식품업무기구를 설치하여 녹색식품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

- CGFDC는 1993년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IFOAM에 가입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기업 및 관련 기관과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였음.
- 또한 1994년에는 중국녹색식품총공사(中國綠色食品總公司)[5]를 설립하

---

4) 중국 특유의 농업경영 형태인 '농간계통'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인민해방군 제대군인이 주축이 되고, 이후 도시의 청년지식인이 대량으로 참여하여 황무지 개간을 통해 조성된 국영농장체계(State Farm System)를 의미함. '농간계통'은 중국의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모두 분포하며, 일반적으로 국영농장을 중심으로 한 국유제(전인민소유제) 농업기업 형태로 존재함. 농업부 내 농간국(農墾局; Bureau of Agricultural Reclamation)이 '농간계통'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중국의 농간계통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형진 외. 2009.「중국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P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여 수출입경영권을 획득함으로써 녹색식품의 국제시장 진입 및 경쟁에 참여하였음.

○ 중국의 유기농업은 1989년 구(舊) 국가환경보호국[6] 남경환경과학연구소 농촌생태연구실이 처음으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가입한 것이 그 출발점임. 1994년에는 구(舊) 국가환경보호국의 비준하에 중국 최초의 유기식품 R&D기구인 구(舊) 국가환경보호국 유기식품발전중심(OFDC)이 남경에 설립되었음.

○ OFDC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다양한 경영형태의 유기식품무역회사와 유기농산물 생산기지가 설립 및 조성되었음. 1990년대 들어 OFDC 이외에도 중녹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中綠華夏有機食品認證中心, COFCC), 중농품질인증중심(中農質量認證中心, OTRDC) 등 다수의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설립되었음.

- 1995년 이후 미국의 OCIA, 프랑스의 ECOCERT, 독일의 BCS와 CERES, 스위스의 IMO, 일본의 JONA 등 국외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중국에 진출하여 유기인증 검사 및 인증 업무를 전개하였음.
- 주요 선진국이 중국 국내 인증을 획득한 유기식품을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들 국외 유기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은 중국 유기식품의 수출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

---

5) 중국녹색식품총공사는 원래 농업부 산하의 직속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종자그룹(中國種子集團)의 자회사로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국유기업임.

6) 국토환경보호총국을 거쳐 현재 환경보호부로 재편됨.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은 2000년대 들어 1990년대의 초보적인 발전단계를 넘어 농산물 품질안전관리정책의 틀내에서 각종 표준의 제정·개정 등을 통해 인증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발전단계로 진입하였음.

○ 농업부는 녹색식품 인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0년 산지환경 표준을 제정한 데 이어 2006년까지 녹색식품 인증의 근거가 되는 생산기술표준, 생산품 표준, 포장 및 저장·운송 표준을 제정하여 표준에 근거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국무원은 2003년 11월 1일 「인증인가조례認證認可條例」(국무원령 제390호, 2003.9.8 공포) 시행을 계기로 유기식품의 관리 및 인증 업무를 구(舊)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로 이전하였음.[7)]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4년 11월 5일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67호), CNCA는 2005년 6월 2일 「유기산품인증 실시규칙」(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공고 2005년 제11호, CNCA-OG-001:2005)을 제정함으로써 유기식품 인증을 위한 통일적인 요구사항과 방법론을 제공하고, 유기식품 인증의 유효성 및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였음.
- 또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7) 「유기식품인증인가관리업무 이전 사항에 관한 통지關於有機食品認證認可管理工作移交事項的通知」(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국가환경보호총국, 國認可聯[2004]17호, 2004.3.25)

2005년 1월 9일 [유기산품 국가표준(GB/T 19630-2005)](2005.4.1 시행)을 제정함으로써 유기식품 인증의 기술적 근거를 규범화하였음.

- 2011년 말 CNCA의 비준을 거쳐 인가된 25개의 유기인증기관이 중국 유기식품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기관 중 OFDC는 2003년 2월 IFOAM의 인가를 획득하여 중국에서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가된 유기인증기관이 되었으며, 2012년 6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IFOAM의 인가를 받은 30개 유기인증기관 중 하나임.[8)]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가운데 무공해농산물은 2000년대 들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인증체계를 갖추었음. 2001년 4월 26일 농업부는 이른바 '무공해식품행동계획(無公害農産品行動計劃)'의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무공해농산물의 생산증대 계획을 제시하고, 무공해농산물의 인증과 산지 인정을 적극 추진하였음.

- 농업부 산하에 무공해농산물의 인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안전중심(農産品質量安全中心)을 설치하고 각 성(자치구·직할시), 시, 현에도 관련 기구를 설치하였음.
- 또한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동으로 [무공해농산물 관리방법](2002.4.29 공포·시행), 농업부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공동으로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절차], [무공해농산물 인증절차]

8) 2012년 6월 20일 현재 IFOAM의 인가를 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유기인증기관은 18개국(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이탈리아, 인도, 볼리비아, 한국, 독일, 남아공, 홍콩, 브라질, 미국, 일본, 태국, 중국, 보스니아, 우간다) 32개 기관이며, 이중 한국은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2006년),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2006년),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2009년) 등 3개 기관이 있음("IFOAM Accredited Certification Bodies as of June 20, 2012" http://www.ioas.org).

(2003.4.17 공포·시행), 「무공해농산물표지 관리방법」(2003.5.7 공포·시행)을 제정하였음.

- 이로써 무공해농산물의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절차를 규범화하는 한편 무공해농산물의 관리 및 인증업무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규범화된 인증체계를 확립하였음.

❑ 주요 정책 내용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정책의 범주에 속함. 농업부는 2001년 4월 '무공해식품행동계획(無公害食品行動計劃)'을 선언한 데 이어 10월 31일 발표한 문건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업무의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強農產品質量安全管理工作的意見」(農市發[2001]22호)에서 처음으로 녹색식품을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범주에 포함시키고 명확하게 정책 대상의 지위를 부여하였음.[9)]

○ 위 「의견」에서는 녹색식품이 농산물 품질안전 인증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정부 추진, 시장 운용'이라는 발전방향에 따라 인증업무 처리시한을 줄이고 인증범위를 확대하여, 녹색식품이 농업생태환경 개선, 농산물 브랜드 전략 실시, 농산물 수출확대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9) 중국은 식용농산물 생산단계와 식품생산·가공단계, 식품유통·판매단계, 식품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GAP 도입 및 친환경농식품 인증, 식품가공단계에서 HACCP 및 GMP 도입, 식품유통·판매단계에서 GHP 도입 및 '삼녹(三綠)프로젝트' 추진, QS마크 부착, 식품소비단계에서 식품리콜제도 그리고 전체 단계에 걸쳐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주문하였음. 또한 농산물 생산가공 방식, 품질안전제도 구축 등 방면에서 시범을 보이고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도 강조하였음.

표 4.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정책 관련 주요 문건 목록

일시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2001.10.31	農市發 [2001]22호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업무의 강화에 관한 의견 關於加強農產品質量安全管理工作的意見 / 농업부
2002. 1.18	農市發 [2002]4호	〈녹색식품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農業部關於加快綠色食品發展的意見〉的通知 / 농업부
2002. 7.23	農市發 [2002]12호	〈"무공해식품행동계획" 전면추진의 실시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全面推進"無公害食品行動計劃"的實施意見〉的通知
2004. 9. 1	國發 [2004]23호	식품안전 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결정 關於進一步加強食品安全工作的決定 / 국무원
2004.12. 8	農市發 [2004]15호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 關於進一步加強農產品質量安全管理工作的意見 / 농업부
2004.12.15	國標委農 輕聯 [2004]99호	식품안전표준체계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 關於加強食品安全標准體系建設的意見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05. 8. 8	農市發 [2005]11호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의 발전에 관한 의견 關於發展無公害農產品綠色食品有機農產品的意見 / 농업부
2007. 7.26	국무원령 제503호	식품 등 생산품 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 규정 關於加強食品等產品安全監督管理的特別規定 / 국무원
2007. 8. 2	農市發 [2007]21호	국무원의 〈식품 등 생산품 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 규정〉 시행 관철에 관한 의견 關於貫徹落實〈國務院關於加強食品等產品安全監督管理的特別規定〉的意見 / 농업부

○ 중국은 2000년대 들어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을 모색하였음.

- 특히 국내외에서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

데 중국산 수출농산물이 농약잔류 기준 초과로 거부, 압류, 반품, 클레임 제기, 계약중지, 무역거래 정지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문제는 중국 농업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음.

- 농산물 품질안전수준의 제고는 농업구조조정 촉진, 농촌가구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소비자의 식품소비 안전 보장, WTO가입에 따른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시장경제 질서의 정돈 및 규범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음.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관련 정책은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 또는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농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농산물의 범주에 속하는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증제도 및 표준체계 확립, 관리감독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중국의 주요 문건에 나타난 친환경농식품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10]

○ [의견]은 '제10차 5개년(2001~2005년) 계획' 기간에 각종 정책조치를 통해 달성해야 할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업무의 목표를 7가지로 제시하였음.

-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이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만족

10) 2004년 12월 8일 농업부가 발표한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加強農產品質量安全管理工作的意見](農市發, [2004]15호)

- 농업용 화학합성 물질에 의한 생산과정에서의 농산물 오염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통제
- 무공해농산물 생산기지 및 생산표준화 시범기지 조성
- 주요 농산물을 기술표준에 근거하여 생산
- 안전 관련 지표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의 요구 수준 충족
- 시장경쟁력을 지닌 유명브랜드 농산물 육성
- 중·대도시의 농산물시장 표본검사 합격률 85% 이상 보장

○ [의견]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채람자(菜籃子)' 농산물의 품질안전문제, 즉 채소류의 맹독성 유기인류 농약잔류 문제, 차의 농약잔류 및 중금속 기준 초과 문제, 과일류의 농약잔류 기준 초과 및 호르몬 남용문제, 가축·가금 사육과정의 약물남용(특히 돼지사육과정에 사용하는 금지약물 문제) 및 생산품의 약물잔류 기준 초과 문제와 동물전염병 방역문제, 수산물 양식과정에서 약물남용 및 생산품의 유독유해물질 기준 초과 문제, 조개류의 오염문제 해결을 강조하였음.

○ [의견]은 또한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업무의 2가지 중점 사항을 제시
- 농산물 품질안전관리의 5단계, 즉 농산물 산지환경, 농업투입재, 생산과정, 포장표시와 시장진입의 관리를 강화
-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체계, 검사체계, 품질인증체계, 법률집행 및 감독체계, 기술보급체계, 시장정보체계 등 농산물 품질안전보장체계 구축.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범지역과 시범사업을 잘 활용하고,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며,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선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을 강조

나. 무공해식품행동계획

○ 농업부는 2001년 4월 무공해식품행동계획(無公害食品行動計劃)을 선언하고,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심천시(深圳市) 등 4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2002년 상반기에는 김숙성 난주시(蘭州市), 강소성 남경시, 요녕성 대련시, 산동성 수광시(壽光市) 등 4개 지역을 추가하여 시범사업 실시지역이 8개 도시로 확대되었음.
- 이어서 2002년 7월 23일 농업부는 《〈"무공해식품행동계획" 전면 추진의 실시의견〉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全面推進"無公害食品行動計劃"的實施意見〉的通知》(農市發[2002]12호)를 하달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추진하였음.

○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실시는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하나로 묶어 '삼위일체, 전반적 추진'이라는 사업모델을 토대로 중국의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음.

- 체계 구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농산물 생산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품질안전 수준을 효율적으로 개선 및 제고하여, 약 5년 내에 식용농산물의 무공해 생산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소비안전성을 보장하는 한편 품질안전 관련 지표가 선진국의 중급 수준에 도달하도록 함.
- 채소, 과일, 차, 버섯, 축산물, 수산물 등 신선농산물의 산지 품질안전 수준이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에 도달하도록 함.
- 중·대도시 도매시장, 대형 농산물자유무역시장 및 마트의 신선농산물

품질안전 표본검사 합격률이 95%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식용농산물로 인한 식중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

- 수출농산물의 품질안전 수준을 대폭 제고하여 국제표준의 요구 수준과 수출대상국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함.

○ 농업부는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생산과정 관리감독 강화, ②시장진입 및 품질이력추적제도 실시, ③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체계, 검사체계 및 인증체계 구축, ④위법행위 관리감독, 기술보급 및 시장정보서비스 업무 강화, ⑤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농산물 품질안전관리제도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두도록 하였음.

○ 특히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채람자(菜籃子) 농산물과 수출농산물의 품질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해결해야 할 7가지 문제로 ①채소류의 농약잔류 기준 초과 문제, ②과일류의 농약잔류 기준 초과 및 호르몬 남용문제, ③차의 농약잔류 및 중금속 기준 초과 문제, ④가축·가금 사육과정의 약물남용 및 생산품의 약물잔류 기준 초과 문제, 동물전염병 방역문제, ⑤수산물 양식과정에서 약물남용 및 생산품의 유독유해물질 기준 초과 문제, 조개류의 오염 문제, ⑥농산물 산지환경 오염문제를 제시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채소류의 농약잔류 기준 초과 문제, 가축·가금 사육과정의 약물남용 문제, 조개류의 오염 문제 및 수출농산물의 품질안전 문제의 해결에 업무를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음.

○ 농업부는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생산과정

의 관리감독 강화, 시장진입제도 실시, 품질안전 보장체계 완비 등을 제시하고 각 조치별로 세부적인 조치 사항을 제시하였음(표 5. 참조).

-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은 해당 행정구역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농업행정기관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실천가능한 실시방안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 각 지방정부의 무공해식품행동계획 실시 상황은 6개월 단위로 농업부에 보고하고, 농업부는 정기적으로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 성격을 분명히 하였음.

표 5.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주요 추진 조치

추진 조치		주요 내용
생산과정 관리감독 강화	생산기지 건설 강화	• 국가급 및 성급 무공해농산물 생산기지, 표준화생산 종합시범기지, 수출농산물 생산기지 조성
	산지환경 개선	• 공업 '3폐' 및 도시생활쓰레기의 농업생태환경 오염 통제 • 화학비료,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 등 농업투입재의 농업생태환경 및 생산품 오염 중점 해결
	투입재 관리	• [농약관리조례], [수의약관리조례], [사료 및 사료첨가제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투입재 시장진입제도 확립 • 정기적으로 사용 금지·제한, 추천 농업투입재 목록 공표 • 사용 제한 농업투입제의 사용 통제 및 규범화 • 농업투입재 투입구조의 조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 • 농업투입재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품질이 열악한 가짜 농업투입재의 제조, 판매 및 사용 행위 근절
	생산 표준화	• 무공해농산물 생산기술 표준과 규범의 실시 강화 • 농산물 생산·경영체의 표준에 근거한 생산 및 가공 지도 • 농산물의 등급 선별, 포장, 신선보관, 저장 및 가공업의 표준화생산 수준 제고
	생산·경영 조직화	• 농업기술협회, 유통협회 등 농촌전업합작경제조직(농업협동조직) 및 중개인조직의 발전 촉진 • '기업+농가', '협회+농가' 등 다양한 유형의 농산업화경영 방식을 통해 생산구조 및 지역배치구조 조정 촉진, 규모화와 조직화 제고를 통해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제고

추진 조치		주요 내용
시장진입 제도실시	검사제도 구축	•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농산물 산지환경, 농업투입재 및 농산물 품질안전 상황 검사하여 국가의 관련 표준과 규범에 부합하도록 시장 출하 농산물의 품질안전 확보 • 농업부는 2003년부터 채소의 농약잔류 검사, 축산물의 사용금지약물 표본조사 업무 개시
	검사기술 보급	• 농산물 생산기지, 도매시장, 자유무역시장에서 농약잔류, 수의약 잔류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검사 실시 • 검사기술의 보급 및 검사결과 공표
	전문판매 네트워크 구축	• 농업부 및 성급 지정 농산물 도매시장 및 마트에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 추진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 확득 농산물과 검사 합격 농산물의 전문 판매장 판매 추진
	표시제도 실시	• 농산물의 선별 포장 출하 및 산지표시제도 실시: 산지 및 생산자(경영자) 표시 • 유전자변형 생물 표시관리 품목의 농산물은 관련 표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표시 엄격히 관리
	이력추적제 책임제도 실시	•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기록제도, 돼지, 소, 양의 귀인식표관리제도 실시로 품질안전 이력추적 실현 • 계약 형식으로 구매·유통판매 농산물의 품질안전에 대해 약정 실시 • 농산물 품질안전 책임제도 실시: 생산자는 유통판매인에게 유통판매인은 소비자에게 경영자에게 생산 및 유통판매한 농산물의 품질안전 책임 • 검사불합격 농산물의 리콜, 배상 및 시장퇴출 기제 모색
품질안전 보장체계 완비	법제화	•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방면의 법률법규 제정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방법규 및 규정 제정 • 법률 집행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투입재로부터 농산물 품질안전을 중점으로 하는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 대한 법률 집행 및 감독으로 전환
	표준체계 완성	• 국제표준을 적극 채택하고 오래된 농업 관련 국가표준, 농업부문표준, 지방표준의 정리 및 수정 • 긴급을 요하는 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제정
	검사체계 완성	• 농업부 산하에 농산물(농업투입재, 농업생태환경 포함) 품질안전검사중심 설립 • 성(자치구·직할시), 시, 현의 농산물 품질안전검사기구 설립
	인증체계 구축	• 농산물 품질안전 인증기구의 설치, 무공해농산물의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표지관리 업무 적극 추진 • GAP, HACCP체계 인증 적극 추진 • 농산물 품질인증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정부인도, 시장운용'이라는 발전방향에 따라 인증을 확대하여 시장점유율 제고

추진 조치		주요 내용
	기술개발 보급 강화	• 농약잔류, 수의약잔류 등 유독유해물질 검사기구 및 설비, 방법의 비교 검토와 보급 강화 • 신품종,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 개발, 보급과 기술서비스 업무 강화 • 농산물 산지환경 정화기술 적극 보급
	선전,교육 훈련 강화	• 농산물 품질안전 방면의 관련 정책, 법규, 표준, 기술의 선전 및 교육훈련 역량 강화 •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화 생산기술의 보급을 생산비 절감, 효율성 증대, 농가소득 증대 업무와 연계
	투자 확대	•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농산물 품질안전표준의 제정(수정), 검사체계 건설, 농산물 품질안전 인증, 검사감독, 무공해농산물 생산기지 및 표준화 생산 종합시범단지, 시장정보, 품질안전 과학기술, 농업기술 보급, 동식물방역 등 방면에 자금 투입 확대

자료: 《〈"무공해식품행동계획" 전면추진의 실시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全面推進"無公害食品行動計劃"的實施意見〉》(2002.7.23, 農市發[2002]12호)

다. '삼녹공정(三綠工程)'과 녹색시장 인증

○ 중국은 1999년부터 11개 부처(상무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철도부, 교통부, 위생부, 공상총국, 환경보호총국, 식품약품감독국,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 국가표준위원회)가 공동으로 '삼녹공정(三綠工程)'을 추진하고 있음.

- '삼녹공정'은 건전한 유통체계와 가축·가금 도축 및 가공업의 식품안전 보장체계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엄격한 시장진입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녹색소비(綠色消費) 확대, 녹색시장(綠色市場) 육성, 녹색통도(綠色通道)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사업임.

○ 먼저 녹색소비(綠色消費)사업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 제고, 품질우선의 소비관념 형성, 각종 선전 및 광고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식품 식별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 위생, 영양,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식단구조 형성,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유리한 소비 방식 유도 등이 주요 내용임.

○ 녹색통도(綠色通道)사업은 식품의 근원적 검사제도 구축, 운송안전 철저, 식품운송 시 위생 및 신선보관 조치, 다양한 연계 운송 및 직송 실시, 불필요한 통행수수료 폐지 등이 주요 내용임.

- 중국은 2009년 말 현재 국도와 고속도로로 이루어진 '5종 2횡(五縱二橫)'의 녹색통도를 건설하였음(총 연장 4.5만km).

표 6. 중국의 '5종2횡(五縱二橫)'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개요

노선	주요 경로
5종(五縱)	
1 은천-곤명(銀川-昆明)	은천(銀川)-성도(成都)-곤명(昆明)
2 호화호특-남녕(呼和浩特-南寧)	호화호특(呼和浩特)-서안(西安)-중경(重慶)-귀양(貴陽)-남녕(南寧)
3 북경-해구(北京-海口) 장사-남녕(長沙-南寧)	북경(北京)-석가장(石家莊)-정주(鄭州)-무한(武漢)-장사(長沙)-광주(廣州)-해구(海口)-장사(長沙)-남녕(南寧)
4 합얼빈-해구(哈爾濱-海口) 천진-북경(天津-北京)	합얼빈(哈爾濱)-장춘(長春)-심양(沈陽)-천진(天津)-제남(濟南)-합비(合肥)-남창(南昌)-광주(廣州)-해구(海口)-천진(天津)-북경(北京)
5 상해-해구(上海-海口) 응담-상산(鷹潭-常山)	상해(上海)-매주(梅州)-심천(深圳)-광주(廣州)-해구(海口)
2횡(二橫)	
6 연운항-오로목제(連雲港-烏魯木齊) 서녕-란주(西寧-蘭州)	연운항(連雲港)-서주(徐州)-정주(鄭州)-서안(西安)-란주(蘭州)-오로목제(烏魯木齊); 서녕(西寧)-란주(蘭州)
7 상해-랍사(上海-拉薩)	상해(上海)-남경(南京)-합비(合肥)-안경(安慶)-무한(武漢)-성도(成都)-랍사(拉薩)

주: 모든 노선은 국도와 고속도로 두 가지 노선이 있음.

그림 3. 중국의 '5종2횡(五縱二橫)' 신선농산물 녹색통도 분포도

○ 녹색시장(綠色市場)사업은 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환경 위생 수준 제고, 엄격한 시장진입관리로 출하 및 판매 식품의 안전 보장, 안전식품(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안심식품, 전용 매대 및 전용 판매코너 설치 등이 주요 내용임.

○ 중국은 ‘삼녹공정(三綠工程)’의 일환으로 국가표준 [농부산물녹색도매시장] 및 [농부산물녹색소매시장](상무부·국가표준화위원회), [녹색시장인증관리방법](상무부·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 공고 2003년 14호), [녹색시장인증 실시규칙](상무부·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 공고 2004년 13호)에 근거하여 녹색시장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녹색시장의 개념은 “녹색시장 표준 또는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인증

기관의 인증을 거치고, 녹색시장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농부산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정의됨([녹색시장인증관리방법] 2조).

- 녹색시장의 인증은 정부 주도 및 기업자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녹색시장 인증 관리 및 감독 업무는 [인증인가조례]에 근거하여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상무부가 책임짐.

그림 4. 중국의 녹색시장 인증 표지

라.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의 발전에 관한 의견][11]

○ [의견]에서는 친환경농식품의 발전 방향으로 "삼위(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일체, 전반적 추진" 방침을 제시하였음.

○ 먼저 무공해농산물은 시장진입의 기본조건으로서 정부주도 원칙을 견지하고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률에 의거하여 표지

11) 2005년 8월 8일 농업부가 발표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의 발전에 관한 의견關於發展無公害農產品綠色食品有機農產品的意見](農市發, [2005]11호)

관리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강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농산물의 무공해 생산 및 안전 소비의 실현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녹색식품은 고품질 안전농산물로서 증명 상표과 품질 인증을 축으로 '정부 추동, 시장운용' 원칙을 견지하여 고소득 소비계층의 소비수요 만족을 목표로 농산물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는 것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유기식품은 농산물 수출확대의 유효 수단으로서 국제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생산품 인증으로부터 점차 생산기지 인증을 주체로 하는 전과정 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의견]은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 발전의 중점 과제로 생산량 확대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제시하는 한편, 유기식품 발전의 중점 과제로 품질 및 수익성 제고를 제시하였음. 특히 무공해농산물은 채람자(菜籃子) 및 쌀자루(米袋子) 농산물, 녹색식품은 비교우위농산물, 가공식품 및 수출농산물, 그리고 유기식품은 국제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산물을 위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음.

○ [의견]에서는 향후 친환경농식품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조치와 함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표 7. 참조).

표 7.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관련 주요 추진 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주요 추진 조치	
통합계획 선별지도	• 무공해농산물: 산지 인정 강화로 생산과정의 품질 통제 및 분산 농가의 품질관리 문제 해결. 생산품 인증 강화로 농산물의 소비 안전과 시장진입 문제 해결 • 녹색식품: 브랜드가치의 비교우위를 발휘하도록 하고 녹색식품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점 생산품, 산업 및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과 인증을 강화 • 유기식품: 지역적으로 자원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국제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선별적 발전 추구
비교우위 발휘 규모 확대	• 무공해농산물: “통일규범, 간편민첩(統一規範,簡便快捷)”의 원칙에 따라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확대 • 녹색식품: 비교우위농산물 산업벨트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대형 표준화 생산기지 건설 확대, 국가급·성급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및 대형 기간 식품가공기업의 육성 • 유기식품: 각 지역의 자원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국제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인증상품의 수익성 제고
표준체계 완성 표준화 추진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관련 표준의 제정 및 수정. 우선적으로 농산물안전 관련 표준과 수출농산물의 품질 관련 표준 제정 • 국제표준의 제정 및 수정에 적극 참여 • 규모, 영향력, 브랜드 가치, 수익성이 큰 생산기지 건설
시장기능 활용 소비수요 견인	• 인증 농식품의 선전, 광고 및 판매 활동 강화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브랜드를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생산, 소비 및 수출 확대 • 조건을 갖춘 지역부터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전문판매점 및 판매대, 전시코너 설치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터넷 거래 촉진
기술교육 강화 생산·경영 규범화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생산기술 교육훈련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기초지식 보급 • 농민들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생산 유도, 생산 전과정 관리 및 생산과정 기록체계 수립
정책적 지원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급 농업행정부문은 재정부문 등의 지원하에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발전 전문기금 설치 – 표준제정, 산지인정 및 생산품인증, 생산기지건설, 검사·감독 등에 사용 • 농업종합개발, 기술보급, 생산기지 건설, 시범지역 건설 등 농산물 생산성 투자항목의 실시를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발전과 연계

	주요 내용
	• 농식품 생산 및 가공 위주의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생산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자원비교우위와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녹색식품과 유기식품 생산 확대 • 조건을 갖춘 지역부터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농가를 재정적 지원 및 장려 범위에 포함 • 신선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녹색통도(綠色通道)' 실시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농민부담을 경감하여 소득 증대 도모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도완비 및 법률에 근거한 관리감독 실시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관리제도 완비 • 무공해농산물: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과 [무공해농산물표지관리방법]의 엄격 집행, [무공해농산물관리감독규범] 제정 필요 • 녹색식품: [녹색식품표지관리방법] 수정, [녹색식품관리방법] 제정 필요 • 유기식품: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엄격 집행, [유기농업 및 유기농산물관리방법] 제정 필요
정기검사 실시 인증 후 관리감독 강화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발전에서 '양과 질', '인증과 관리감독' 중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인정 산지의 투입재 사용과 인증 생산품의 관리감독을 특별히 중시 • 인증 생산품과 기업, 산지에 대한 연간 표본검사 및 검사제도 실시 • 표지의 인쇄, 사용 및 등록의 추적조사 실시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관련 업무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 인증품질체계, 품질수첩 및 절차 관련 문건 집행 상황 정기 검사
정보네트워크 구축, 이력추적 능력 제고	• 인증 생산품, 기업 및 기지에 대한 이력추적 검색네트워크 구축: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정보의 인터넷 공시, 검색, 이력추적제도 적극 실시 • 네트워크정보플랫폼을 통해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신청을 즉시 접수하고 검사감독 결과 공표 • 인증 획득 생산품과 기업(산지)의 품질 신용체계 확립

자료: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의 발전에 관한 의견關於發展無公害農產品綠色食品有機農產品的意見](농업부, 農市發[2005]11호)

3.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아우르는 단일한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인증대상인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별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각자의 인증제도는 제도 확립 시기, 목적, 법령 및 표준(standards), 인증기관 및 조직체계, 절차 및 비용, 표지 등에서 확연히 구별됨.

○ 무공해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임. 반면 구매력을 갖춘 고소득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고부가가치의 실현 및 브랜드화가 주요 목적임.

3.1. 법령 체계

○ 행정법규인 [무공해농산물 관리방법無公害農產品管理辦法](2002.4.29 시행)과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有機產品認證管理辦法](2005.4.1 시행)은 각각 무공해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인증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법령임.
- 1990년대 중반에 인증제도의 틀을 갖춰 인증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녹색식품은 인증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법령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음.

○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의 인증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녹색식품표지 관리방법綠色食品標志管理辦法](1993.1.11 시행)과 [유기산품인증 실시규칙有機產品認證實施規則](2005.6.2 시행)이 있음.

표 8.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 관련 법령 체계 비교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총괄	[무공해농산물 관리방법] - 2002.4.29 공포·시행	×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 - 2004.11.5 공포 - 2005.4.1 시행
주요법령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절차] [무공해농산물 인증절차]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 및 생산품인증 일체화업무 공정규범] [무공해농산물 표지관리방법]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시한 규정] [무공해농산물 고정검사기관 관리방법]	[녹색식품표지 관리방법] - 1993.1.11 공포·시행	[유기산품인증 실시규칙] - 2005.6.1 공포·시행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에 비해 무공해농산물은 인증업무와 관련한 다수의 법령이 있음.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절차無公害農產品產地認定程序」와 「무공해농산물 인증절차無公害農產品認證程序」는 각각 무공해농산물의 산지 인정(認定) 및 생산품 인증(認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산지 인정 업무와 생산품 인증 업무는 본래 분리되어 실시되었으나 2006년 8월 1일 발표된 「무공해농산물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일체화업무 공정규범無公害農產品產地認定與產品認證一體化工作流程規範」을 토대로 업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2007년 1월에는 인증 업무의 단계별 처리시한을 정한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시한 규정無公害農產品認證工作時限規定」을 제정하였음.

○ 「무공해농산물 인증절차」는 국가표준과 농업업종표준을 참고하여 무공해농산물 인증 생산품 목록을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음(3조). 이에 근거하여 2006년 9월 발표된 「무공해농산물 인증실시 생산품 목록實施無公害農產品認證的產品目錄」은 농산물 546개, 축산물 65개, 수산물 204개 등 총 815개의 목록을 확정하였음.

○ 무공해농산물 인증표지와 관련한 사항은 [무공해농산물 표지관리방법無公害農產品標志管理辦法](2003.5.7 시행)이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무공해농산물 인증을 위한 현장검사 규범 및 업무 절차, 무공해농산물 검사항목, 무공해농산물 검사원 관리방법, 검사기관의 선정 및 위탁관리 방법, 인증신청 구비서류, 산지 환경검사 관리방법 등 무공해농산물의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에 관한 다수의 법규, 규칙(規章)이 존재함.

3.2. 표준(standards) 체계

○ 중국에서 친환경농식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의 기술적 근거인 표준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12].

표 9.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 표준체계 비교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성질	강제성 및 비강제성 농업업종표준 혼용	비강제성 농업업종표준	비강제성 국가표준
구조	6개 분야: 산지환경, 생산품, 투입재 사용, 생산관리기술, 가공기술, 인증관리기술	5개 분야: 산지환경, 생산기술, 생산품, 포장·저장·운송, 기타	4개 분야: 생산, 가공, 표지 및 판매, 관리체계
제정 현황	2011년 현재 281개 표준	2011년 현재 102개 표준	2005년 제정 단일국가표준 GB/T 19630.1~19630.4-2005
수준	일반농식품보다 일부 지표의 요구수준이 높음	국제표준 참고, 일반농식품과 확연히 구분됨(중국적 기준 적용)	국제표준 및 선진국 표준에 준함(동등성 확보)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12) 중국 [표준화법標准化法](주석령 제11호, 1988.12.29 공포, 1989.4.1 시행)은 표준을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4가지로 구분하고(제6조),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은 다시 강제성표준과 비강제성표준으로 구분함(제7조). 강제성 국가표준과 농업업종표준은 각각 GB×××-××××, NY×××-××××, 비강제성 국가표준과 농업업종표준은 각각 GB/T×××-××××, NY/T×××-××××로 표시함.

표 10.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표준체계

구 분	표준 명칭	개수	내 용
생산품 품질	재배업 생산품(농산물)	72	곡물, 채소, 과일, 차 등 72개 품목
	축산업 생산품(축산물)	19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낙농제품 등 19개 품목
	어업 생산품(수산물)	34	어류, 조개류 등 34개 품목
산지 환경	산지환경품질조사규범	1	–
	산지환경평가준칙	1	–
	재배업 산지환경조건	16	차, 채소, 열대과일, 신선포도, 딸기, 키위, 사과, 벼, 음용 국화, 차용 쟈스민, 하미과, 시설채소, 과실류, 수생채소, 대전작물, 버섯
	축산업 산지환경조건	2	가축·가금의 음용수 및 가공용수 수질
	어업 산지환경조건	2	담수양식용수 수질, 해수양식 용수 수질
투입재 사용	비료사용준칙	–	–
	농약사용준칙	–	–
	수의약사용준칙	2	꿀벌 사육 수의약, 가축·가금 사육 수의약
	가축·가금 사료첨가제 사용준칙	1	가축·가금 사육 사료 및 사료첨가제 사용 준칙
	어업용 약품 사용준칙	3	수산물 중 어업용 약품 잔류허용량, 어업용 약품 사용 준칙, 수산물 중 유독유해물질 허용량
	어업용사료·사료첨가제 사용준칙	1	어업용 배합사료 안전 허용량
생산 관리	농산물 생산관리기술 규범	59	식량, 식용유, 채소류, 과일류, 차, 버섯 등 59개 품목의 생산관리기술규범
	축산물 생산관리기술 규범	6	돼지, 젓소, 육우, 육토끼, 육양, 꿀벌 사육관리준칙
	가축·가금 방역준칙	12	돼지, 산란계, 젓소, 육우, 육토끼, 육양, 오리, 거위 등 9개 품종의 사육방역준칙 가금사육 생산관리규범, 가금 도축가공 생산관리규범, 가축·가금 사육방역준칙
	어업 생산관리기술규범	30	담수양어 기술규범 어류 및 새우 등 양식기술규범 해양수산물 어획 생산관리규범
가공기술		9	차, 우유, 쌀, 밀, 면 등 9개 품목 가공기술규정
인증관리		11	생산품 검사규범, 인정인가 현장검사규범, 생산품 인증 준칙, 산지인정규범, 생산품 표본검사 규범(통칙, 식량 및 식용유, 채소, 과일, 차, 축산물, 수산물)
합 계		281	–

자료: 中國農産品質量安全網(http://www.aqsc.gov.cn)

○ 무공해농산물 인증의 기술적 근거인 무공해농산물 표준은 농업부가 제정한 강제성 농업업종표준과 비강제성 농업업종표준이 섞여 있으며, 생산품의 품질, 산지환경 조건, 투입재 사용, 생산관리기술, 가공기술, 인증관리기술 등 6가지 분야의 표준으로 구성됨.

- 2011년 말 현재 생산품 품질 관련 125개(농산물 72개, 축산물 19개, 수산물 34개), 산지환경조건 관련 22개, 투입재사용 관련 7개, 품목별 생산관리기술 관련 107개, 가공기술 관련 9개, 인증관리 관련 11개 등 6개 분야에서 총 281개의 표준이 제정됨[13].

○ 녹색식품 표준은 농업부가 제정한 비강제성(추천성) 농업업종표준(NY/T)으로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유기농업 및 식품가공 기본 표준', 유럽연합의 '유기농업 및 관련 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조례(EEC2092/9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표준 그리고 중국의 국가환경표준, 식품품질표준 및 관련 법률·법규에 기초하여 제정하였음.

○ 녹색식품 산지환경 표준인 {녹색식품 산지환경기술조건綠色食品產地環境技術條件}(NY/T 391-2000)은 산지의 공기 질 표준, 관개수 수질 표준, 어업 수질 표준, 가축·가금 사육 용수 표준 및 토양환경 질 표준의 각 지표 및 농도한계치, 모니터링, 평가방법을 규정하였음. 또한 녹색식품 산지의 토양비옥도 등급과 토양의 질 종합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음.

---

13) 표준의 번호는 NY 5×××-××××, NY/T 5×××-×××× 형식임.

그림 5. 중국의 녹색식품 표준체계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 중국 농업부 산하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녹색식품 산지환경 표준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녹색식품 산지환경품질 현황 평가강요(시행)綠色食品産地環境質量現狀評價剛要(試行)]에 기초하여 [녹색식품 산지환경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가이드라인綠色食品産地環境調查監測與評價導則](NY/T 1054-2006)을 제정하였음.

○ 녹색식품 생산기술 표준은 녹색식품 표준체계의 핵심이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농자재 사용준칙과 지역에서 통용되는 생산기술 조작규정으로 구성됨.

- 2011년 현재 녹색식품 농자재 사용준칙은 모두 7가지[14]이며, 사용을 허용, 제한, 금지하는 농자재 및 그 사용 방법, 용량, 횟수, 휴약기 등을 규정하였음.
- 4개 부문의 기술규정으로 구성된 녹색식품 생산기술 조작규정은 농자재 사용준칙에 의거하여 지역별로 제정되며, 녹색식품의 생산 지도 및 생산기술 규범화에 적용됨.

○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은 최종 생산품의 품질을 측정하는 척도임. 일반식품의 국가표준과 마찬가지로 식품의 외관, 영양, 위생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생방면의 요구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임. 특히 잔류

14) [녹색식품 식품첨가제사용준칙綠色食品食品添加劑使用准則](NY/T 392-2000), [녹색식품 농약사용준칙綠色食品農藥使用准則](NY/T 393-2000), [녹색식품 비료사용준칙綠色食品肥料使用准則](NY/T 394-2000), [녹색식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사용준칙綠色食品飼料和飼料添加劑使用准則](NY/T 471-2001), [녹색식품 수의약사용준칙綠色食品獸藥使用准則](NY/T 472-2006), [녹색식품 동물위생준칙綠色食品動物衛生准則](NY/T 473-2001), [녹색식품 어업약품사용준칙綠色食品漁藥使用准則](NY/T 755-2003)

농약과 중금속 검사항목의 종류가 많고 지표수준도 높음. 또한 가공생산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녹색식품 산지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녹색식품 생산기술 조작규정에 따라 가공,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년 말 현재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은 모두 89개임.

○ 녹색식품의 포장 표준인 [녹색식품 포장통용준칙綠色食品包裝通用准則](NY/T 658-2002)은 녹색식품 생산품의 포장과 관련하여 원료, 제조, 사용, 회수, 폐기의 전과정을 규정하고 있음.

○ 녹색식품 저장 및 운송 표준인 [녹색식품 저장·운송통용준칙綠色食品貯藏運輸通用准則](NY/T 658-2006)은 녹색식품 저장시설의 설계, 건축 및 건축 재료, 시설주변 환경, 시설관리, 인원 및 기록 등을 규정하였음. 또한 운송 수단 및 운송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규정하였음.

○ 중국 최초의 유기식품 관련 표준은 구(舊) 국가환경보호국이 2001년 12월 25일 공포(2002.4.1 시행)한 환경보호부문 표준 HJ/T 80-2001(유기식품기술규범)임. 중국은 유기식품의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제정을 추진하여 2005년 1월 19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국가표준 GB/T 19630-2005(유기산품)을 제정하였음(2005.4.1 시행).

- 이 표준은 유기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기산품(有機產品; organic produc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국가표준 GB/T 19630-2005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으로 정의하였음[15].

- 이는 국제적으로 유기수산물, 유기임산물, 유기섬유, 유기종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산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유기목재(organic timber)를 활용한 장난감, 침대, 의자, 탁자 등과 유기면(organic cotton)를 이용한 잠옷, 양복, 내의, 면가방과 유기향수, 화장품 등이 인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유기산품 국가표준은 IFOAM, CODEX, EEC2092/91 등 국제표준과 미국 NOP, 일본 JAS 등 국가표준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음. 생산(GB/T 19630.1-2005), 가공(GB/T 19630.2-2005), 표지 및 판매(GB/T 19630.3-2005), 관리체계(GB/T 19630.4-2005) 등 모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3.3. 인증 기관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별로 서로 다른 인증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는 인증 추진 방식에서 무공해농산물은 '정부운용, 공익성 인증', 녹색식품은 '정부추동, 시장운용', 유기식품은 '경영성 인증'이라는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

○ 무공해농산물 인증은 중국 정부의 책임하에 기본적인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의 규범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행위에 속함. 한편 녹색식품

15) 이 표준에서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에 대한 정의는 HJ/T 80-2001(유기식품기술규범)의 정의와 동일함.

인증은 시장시스템이 기본적인 동력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운용하고, 유기식품 인증은 순전히 유기식품 생산·경영자(주로 기업)의 경영 행위에 속함.

표 11.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조직 체계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총괄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AQSC)	농업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CGFDC)	국무원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인증 기관	농산물품질안전중심 • 산지인정은 각 지방정부 무공해농산물 관련 업무기구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 산지인정은 각 지방정부 녹색식품 관련 업무기구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CNAS)가 인가하고 CNCA가 비준한 국가급 및 민간 전문인증기관 • 25개 기관(2011년)
산지 환경검사	AQSC가 인가한 기관 • 191개 기관(2011년)	CGFDC가 인가한 기관 • 72개 기관(2011년)	상 동
생산품 품질검사	상 동 • 165개 기관(2011년)	상 동 • 46개 기관(2011년)	상 동
유효기간	3년	3년	1년
인증추진방식	정부운용, 공익성 인증	정부추동, 시장운용	경영성 인증행위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 무공해농산물

○ 무공해농산물의 인증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2002년 12월 설립된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農産品質量安全中心; AQSC)임. 산하에 재배업생산품 인증중심, 축산업생산품 인증중심, 어업생산품 인증중심을 두고 있음.

○ 무공해농산물의 산지 인정(認定) 업무는 전국적으로 68개의 농산물품질안

전중심의 각 성급 업무기구(성급 농산물품질안전중심, 무공해농산물관리 판공실, 농산물 지리표지관리 판공실)가 담당함. 성급 업무기구의 주요 업무는 무공해농산물의 산지 인정, 생산품 검사, 인증 1차 심사, 표지 보급, 감독 및 표본조사 등임.

그림 6. 무공해농산물 인증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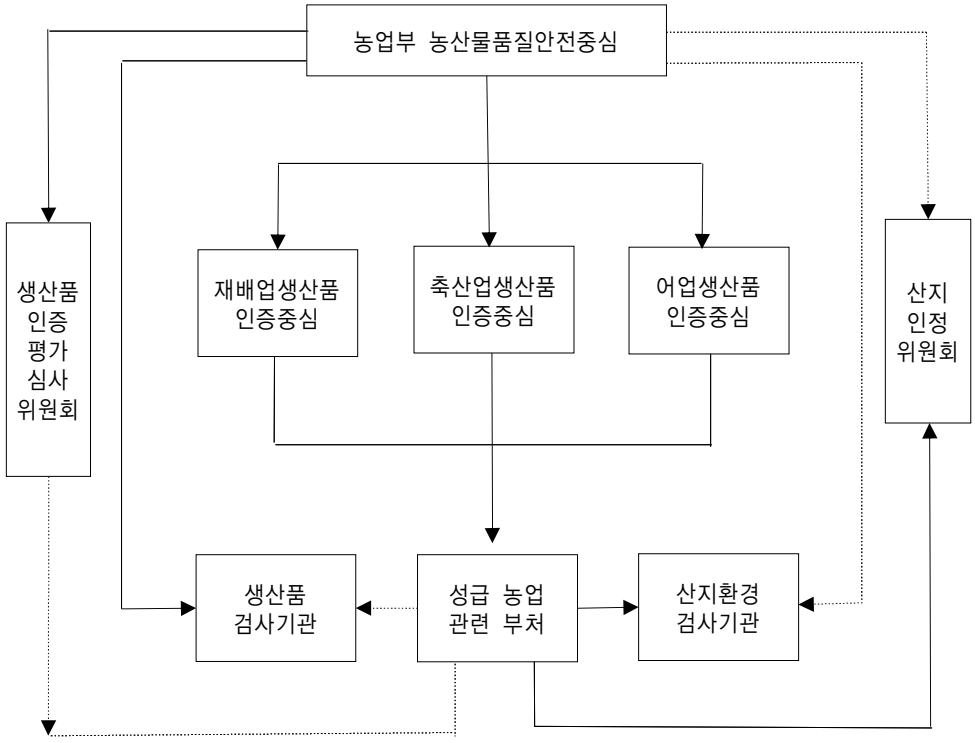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農産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 무공해농산물인증평가심사위원회(無公害農産品評審委員會)는 AQSC의 지도를 받아 무공해농산물의 기술적 평가심사 업무를 담당함.[16] 각 성급 업무기구의 지도를 받는 산지인정위원회(産地認定委員會)는 무공해농산물

산지 인정의 최종 심사업무를 책임짐.

○ 산지환경 검사기관은 성급 무공해농산물 산지 인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산지 환경검사와 현황 평가 업무를 담당함. 생산품 검사기관은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의 위탁을 받아 무공해농산물 검사 업무를 담당함. 이들 검사기관의 자격 유효기간은 3년임.

-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무공해농산물 생산품 검사기관(產品檢測機構) 165개와 산지환경 검사기관 191개가 AQSC의 인가를 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녹색식품

○ 녹색식품의 인증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은 1992년 설립된 농업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中國綠色食品發展中心; OGFDC)임.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이 설치 운영하는 녹색식품인증평가·심사위원회(綠色食品認證評審委員會)가 녹색식품 인증의 평가 및 심사를 책임지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 녹색식품의 산지 인정 업무는 무공해농산물 인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

---

16) 2010년 8월 3일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 제4차 무공해농산물 평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음.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의 주임이 주임위원, 부주임과 재배업중심, 축산업중심, 어업중심 주임이 부주임위원을 맡고 있음. 전체 위원수는 290명이며, 1차부터 계속해서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이 158명임. 재배업, 축산업, 어업, 품질안전관리분야의 전문가 비율은 각각 45%, 20%, 15%, 20%임(中國農產品質量安全網 http://www.aqsc.gov.cn).

방정부의 녹색식품관리기구(성급 녹색식품발전중심)가 담당함.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의 지방정부 녹색식품관리기구를 두고 있음.

-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이 선정하여 인가한 산지환경 검사기관과 생산품 품질 검사기관이 각각 산지환경 검사와 생산품 검사를 실시함.
-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부 녹색식품발전중심이 위탁 인가한 녹색식품 생산품품질 검사기관이 46개, 산지환경 검사기관이 72개임.

❑ 유기식품

○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은 유기산품(유기식품 포함) 인증을 “유기산품 인증기관이 유기산품 국가표준과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기산품의 생산과 가공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함(2조).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NCA)는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유기산품 인증활동의 통일적인 관리와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기관임.
- 지방정부의 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과 각 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국(出入境檢驗檢疫局)은 지방의 인증관리감독기관으로서 관할 행정구역 내 유기산품 인증활동에 대해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함.

○ 유기산품의 실질적인 인증업무는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中國合格評定國家認可委員會; CNAS)가 인가하고 CNCA가 비준한 국가급 및 민간 전문인증기관이 실시함.

- 산지(생산기지) 환경검사와 생산품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도 CNCA의 비준을 받아 검사업무를 실시함. CNCA는 정기적으로 유기산품 인

증기관, 산지 환경 검사기관, 생산품 검사기관을 발표함.

- 2011년 말 현재 CNCA의 비준을 거친 유기산품 인증기관은 중국 최초의 유기식품 인증기관인 환경보호부 유기식품발전중심(OFDC), 농업부의 유기농업운동의 발전 촉진 및 유기식품 인증·관리 전문기관인 중록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中綠華夏有機食品認證中心; COFCC),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설립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국가급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중심(中國質量認證中心; CQC)을 포함하여 25개 기관임.

3.4. 인증 절차

❑ 무공해농산물

○ 무공해농산물의 인증은 산지 인정과 생산품 인증이 별도로 이루어졌으나 2006년 8월부터 통합 인증을 추진하고 있음.

- 무공해농산물 통합 인증의 주요 절차는 ①산지 인정, 생산품 인증 신청→②산지환경 검사→③생산품 검사→④현, 시급 심사→⑤성급 초심(初審)→⑥AQSC산하 중심의 재심(複審)→⑦인증 평가 및 심사→⑧증명서 발급

○ AQRC는 2007년 1월 24일 공포한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 시한규정]에 근거하여 무공해농산물 인증 업무의 단계별 처리시한을 규정하고 있음. 산지 인정과 생산품 인증을 통합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최대 6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산지 인정과 생산품 인증을 분리 신청하는 경우 업무 처리기간은 각각 90일, 8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그림 7. 무공해농산물의 통합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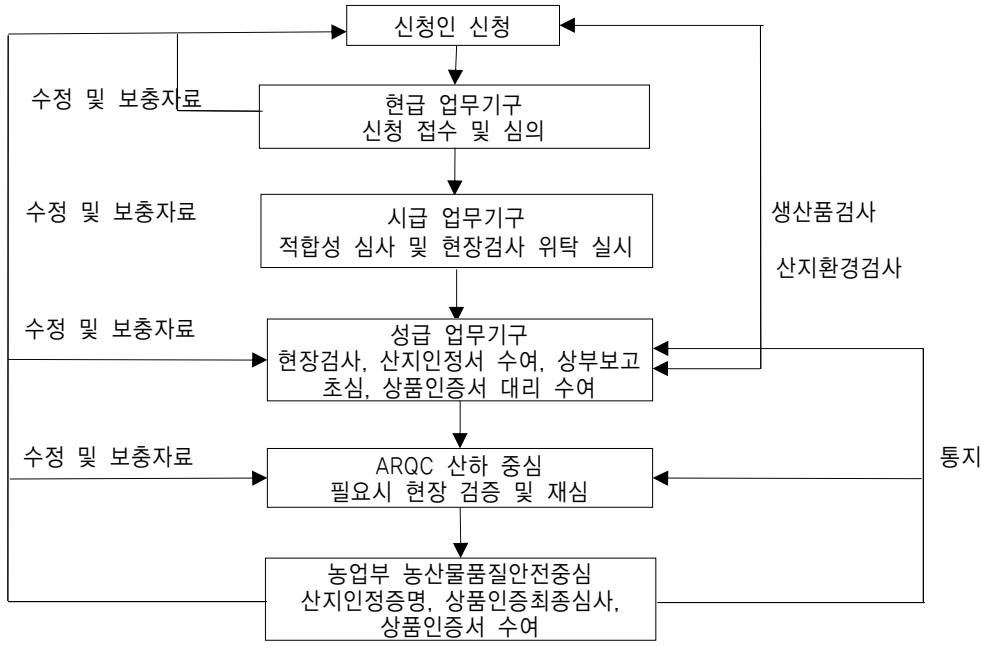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農産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표 12.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의 처리시한 규정

인증 구분		업무 담당기구	중점 심사 사항	처리기간 (노동일)
통합 인증		현급 업무기구	가능성, 완정성 심의	10
		시급 업무기구	진실성, 신뢰성 심의	15
		성급 업무기구	산지 인정 증명서 발급 생산품 인증 인증신청 초심	20
		AQRC 산하 중심	생산품 인증 재심 및 현장조사	20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	생산품 인증 최종심사, 증명서 발급 심의 및 비준, 인증 후 감독	20
분리 인증	산지 인정	현급 업무기구	가능성, 완정성 심의	10
		시급 업무기구	진실성, 신뢰성 심의	20
		성급 업무기구	산지인정 최종심의, 증명서 발급	30
		농업부 AQRC	備案 심사(審核)	30
	생산품 인증	성(현, 시)급 업무기구	초심	45
		AQRC 산하 중심	재심	20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	최종 심사 및 증명서 발급	20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農産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 녹색식품

○ 녹색식품의 주요 인증 절차는 ①인증 신청→ ②접수 및 서류심사→ ③현장검사, 생산품 표본추출 검사→ ④산지환경 모니터링→ ⑤생산품 검사→ ⑥인증 심의(審核)→ ⑦인증 평가 및 심사→ ⑧증명서 발급

그림 8. 중국의 녹색식품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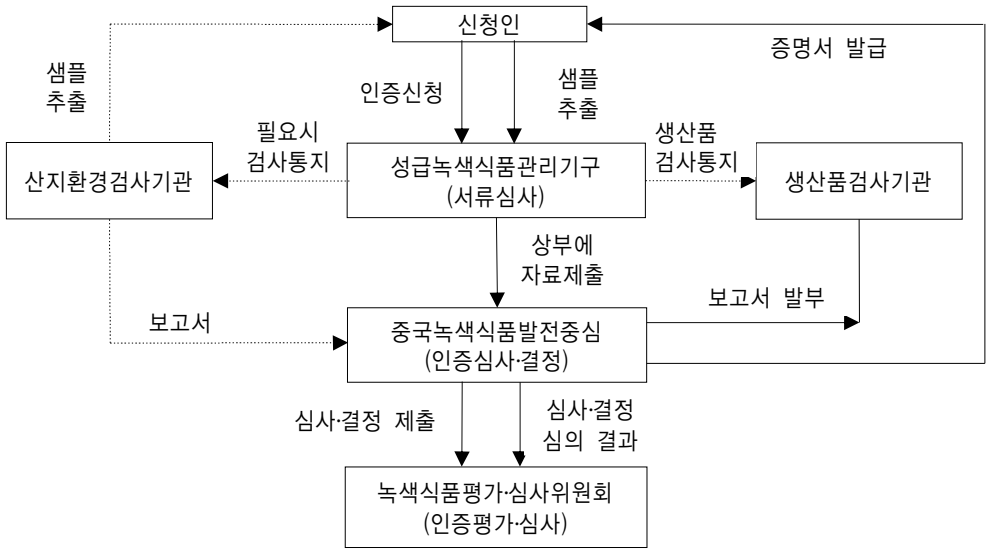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產品質量安全網 (http://www.aqsc.gov.cn).

❑ 유기식품

○ 유기식품의 인증은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범주에 속하는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과는 달리 생산품 인증의 범주에 속함. 유기식품의 인증은 CNAS가 인가한 다수의 인증기관이 실시함. 따라서 각 인증기관별로 인증 절차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인증인가조례認證認可條例},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 {유기산품 인증 실시규칙}, {생산품 인증기관 통용요구: 유기산품 인증 응용지침産品認證機構通用要求:有機產品認證的應用指南}의 규정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의거하여 “과정 검사+필요한 생산품과 산지의 환경 검사 및 모니터링+인증 후 감독”이라는 통상적인 유기식품 인증 모델을 따르도록 하였음.

그림 9.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 절차(COFCC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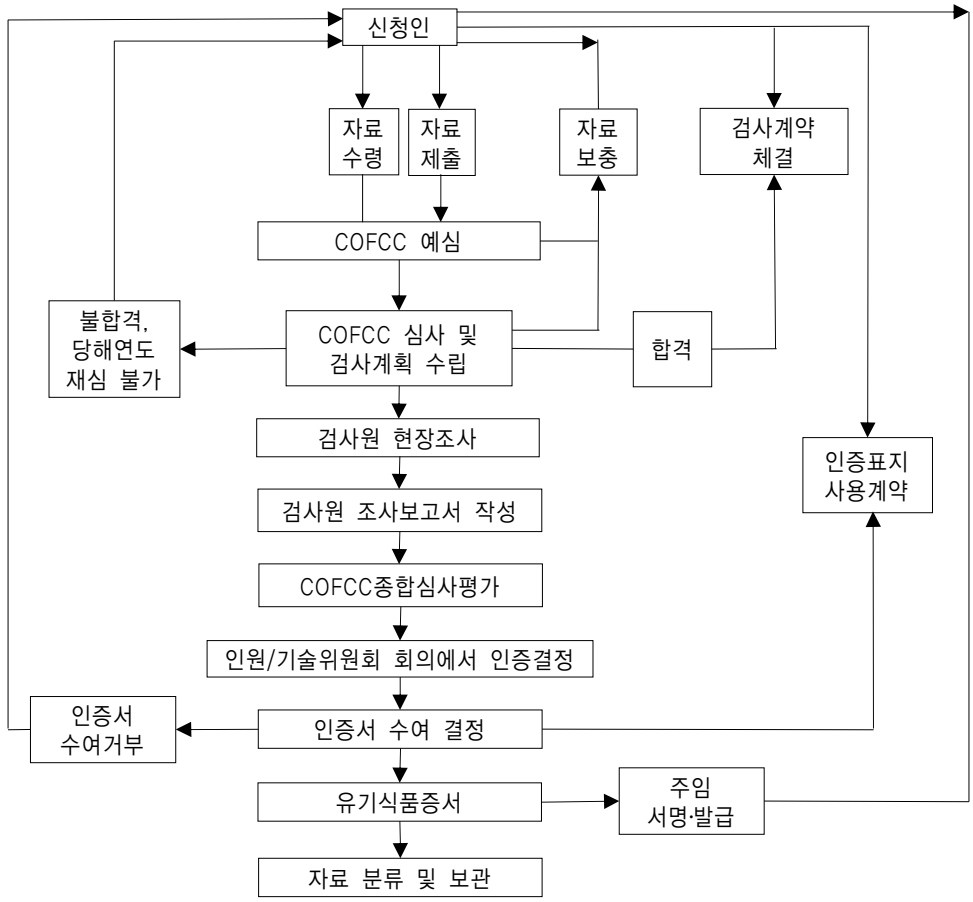

자료: 中綠華夏有機食品認證中心(http://www.ofcc.org.cn)

○ 유기식품 인증의 주요 절차는 ①인증 신청→ ②접수 및 자료심사→ ③검사→ ④생산품 표본 채집 및 분석→ ⑤현장조사→ ⑥ 종합심사 및 인증결정→ ⑦증명서 발급→ ⑧인증 후 관리로 이루어짐.

○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 [유기산품인증 실시규칙]에서는 인증 업무의 단계별 처리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공표한 인증절차에도 업무처리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유기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기식품 인증에는 약 50~60일이 소요됨.[17]

3.5. 인증 비용

○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임.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무공해식품은 재조사 및 증명서 교환(複查換證)이 필요하며, 녹색식품은 인증지속 신청을 하고 인증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유기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인증 유지 절차를 밟아야 함.

○ 무공해농산물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통합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산지환경 검사 비용과 생산품 검사 비용임.
  - 20㏊를 기준으로 산지환경 검사 비용은 4,000위안, 생산품 검사 비용은 1,000위안임. 인증을 획득한 후 [무공해농산물 관리방법]에 의거하

17) 歐陽喜輝 主編. 2009.「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p.23.

여 인증 신청인은 생산품에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부착해야 함.

- 만약 20㏊에서 무(畝) 당 단수가 1.5톤, 1개당 250g을 가정하면 180만 장의 표지를 구입해야 하고, 표지 1장당 0.008위안이라고 가정하면 표지 구입비용은 1.44만 위안임.

○ 3년의 무공해농산물 유효기간 만기가 도래하면 신청인은 재조사 및 증명서 교환(複查換證) 신청시 만약 산지 환경 및 생산규모에 변화가 없다면 생산품 검사보고만 제출하며, 생산품 검사 비용은 1,000위안임. 재조사 및 증명서 교환(複查換證)이 통과되면 다음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표지 부착비용을 지불함.

○ 녹색식품의 인증 비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모두 4가지로 구성됨.

- 인증비: 각 생산품의 인증비용 8,000위안
- 산지환경 검사비: 20㏊ 기준 약 4,000위안
- 생산품 검사비: 약 1,600위안
- 표지 사용비: 매년 약 1,000위안

○ 녹색식품 인증 유효기간 내에 녹색식품 관리기구는 녹색식품 연도 검사 및 생산품 추출검사제도에 의거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함. 이때 검사비용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이 부담함.

- 인증 유효기간 3년 만기가 되면 인증 신청인은 인증 지속 신청을 하게 되며 이때 만약 검사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산지환경에 변화가 없고 생산품이 추출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인증지속 절차시 산지환경 검사비용과 생산품 검사비용을 면제받아 인증신청인은 인증비용과 표지사용 비

용만을 납부함.

○ 유기식품의 인증 비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수수료 표준에 근거하여 책정함.

- 수수료 항목은 신청비, 초심비, 검사비, 등록비, 감독검사비 등임. 이 중 신청비는 500위안, 초심비는 1,500위안, 20㏊ 기준 검사비는 6,000위안, 등록비는 1,800위안, 감독검사비는 600위안, 생산품 검사비는 1,800위안임.

○ 유기식품은 산지환경에 대해 기업이 환경배경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지환경 검사비는 없음. 인증 획득 후 제2차 연도부터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비와 초심비는 면제되며, 검사비도 처음 신청시보다 적어 일반적으로 4,500위안임. 생산품 추출 검사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함.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무공해농산물의 인증 비용이 가장 높은데 이는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이 인증을 받은 무공해농산물은 반드시 생산품에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대다수 유기식품 인증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자문기관에 자문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간 1만 위안의 자문비용이 소요됨. 만약 이 자문비용을 인증비용에 포함하면 유기식품 인증비용이 가장 높음.

표 13.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증 비용 비교

단위: 만 위안(20ha 기준)

인증 유형	인증 비목	인증 기간						연평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무공해 농산물	산지환경 검사	0.4						
	생산품 검사	0.1			0.1			
	표지 부착	1.44	1.44	1.44	1.44	1.44	1.44	
	합 계	2.0	1.44	1.44	1.54	1.44	1.44	1.54
녹색식품	인증비	0.8			0.8			
	산지환경 검사	0.4						
	생산품 검사	0.16						
	표지사용	0.1	0.1	0.1	0.1	0.1	0.1	
	합 계	1.46	0.1	0.1	0.9	0.1	0.1	0.46
유기식품	신청비	0.05						
	초심비	0.15						
	검사비	0.6	0.45	0.45	0.45	0.45	0.45	
	등록비	0.18	0.18	0.18	0.18	0.18	0.18	
	감독검사비	0.06	0.05	0.05	0.05	0.05	0.05	
	생산품 검사비	0.18						
	합 계	1.22	0.68	0.68	0.68	0.68	0.68	0.77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農産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産品質量安全網 (http://www.aqsc.gov.cn).

○ 녹색식품의 인증비용이 가장 낮은 것은 녹색식품의 “정부 주도, 시장 운용”이라는 인증제도 운용메커니즘과 관련됨.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엄격한 수수료 표준을 제정한 것과도 관련됨.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농업부 산하 기관으로서 인증비용 징수는 인증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영리목적이 아님.

3.6. 인증 표지

○ 무공해농산물은 [무공해농산물표지 관리방법], 녹색식품은 [녹색식품표지 관리방법], 유기식품은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 [유기산품인증 실시규

칙], 국가표준 GB/T 19630.3-2005(유기산품 제3부분: 라벨링과 마케팅)에서 각각 인증표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

○ 녹색식품 인증표지는 표지도형, 중문, 영문, 중영문 및 도안 결합의 4가지 형식이 사용됨(그림 10. 참조). 그리고 녹색식품이 A급과 AA급으로 구분되는 데 따라 인증표지도 A급과 AA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 녹색식품 인증표지 허가번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음.

LB -	×× -	××××	××	××××	A or AA
표지	생산품종류	인증년월	성별(국별)	생산품번호	생산품 급별

그림 10.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의 인증 표지

무공해농산물

A급 녹색식품

AA급 녹색식품

○ 녹색식품 인증표지 허가번호에 포함되는 생산품의 종류는 농업생산품, 임업생산품, 축산업생산품, 어업생산품, 가공식품, 음료 및 사료첨가제 등 7가지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53개 생산품으로 소분류함.

그림 11. 녹색식품 인증표지의 4가지 형식(AA급 예)

○ 성(자치구·직할시)별 코드는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복건성, 강서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청해성, 신강위그르족자치구, 홍콩, 마카오, 대만, 중경시의 순서대로 01~34를 부여하였음.

❑ 녹색식품 생산투입재

○ 중국은 2010년 3월 11일 제정된 「녹색식품 생산자료표지 관리방법綠色食品生產資料標志管理辦法」에 근거하여 녹색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농자재(生產資料)에 대해서도 인증표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1996년부터 녹색식품 농자재 인정(認定) 및 추천 업무를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녹색식품 농자재 증명상표 사용허가 관리제도를 실시해온 바 있음.

○ [녹색식품 생산자료표지 관리방법]은 녹색식품 농자재를 “국가 법률 및 법규의 허가, 등기를 획득하고, 녹색식품 생산의 요구사항과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며,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의 심사를 거쳐 특정 녹색식품 농자재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투입재”로 정의하였음(2조).

그림 12. 녹색식품 농자재의 인증표지

○ 녹색식품 농자재표지는 국가상표국(國家商標局)에 등록된 증명상표로서, 녹색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농자재의 표시와 증명에 사용됨.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이 녹색식품 농자재 상표의 등록인임.

○ 녹색식품 농자재의 관리는 증명상표 사용허가제도를 실시함.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녹색식품 생산자료표지 관리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농자재기업 및 생산 제품에 대해 표지사용을 허가함.

- 녹색식품 농자재표지 사용허가를 실시하는 농자재는 비료, 농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의약, 식품첨가제 및 기타 녹색식품 생산과 관련된 생산투입재임([녹색식품 생산자료표지 관리방법] 6조).

○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녹색식품 농자재표지 사용허가 및 관리감독업무를 책임지며, 표지 사용을 허가받은 농자재를 공고함. 공고는 농자재 명칭, 허가번호, 상표 및 기업 명칭을 포함함. 성급 녹색식품 업무기구는 해당 행정구역 내 표지 사용 신청, 현장검사, 자료 심사 및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짐.

○ 녹색식품 농자재표지 사용허가 및 증명서를 획득한 제품은 포장에 표지와 허가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허가번호 표시형식은 다음과 같음.

LSSZ -	×× -	××××	××	××××
녹색식품 농자재	생산품종류	비준년월	성별(국별)	생산품번호

❑ 유기식품

○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표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첫 번째는 중국 국가표준 GB/T 19630.1-2005과 GB/T 19630.2-2005에 근거하여 생산, 가공된 유기산품 인증표지임.

- 중국의 유기산품 인증표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국가표준 GB/T 19630.3-2005(유기산품 제3부분: 라벨링과 마케팅)은 인증표지를 중국 유기산품과 중국유기전환산품으로 구분함.
- 유기전환산품은 국가표준 GB/T 19630-2005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전 전환기(conversion)에 생산·가공된 생산품임.

그림 13. 중국의 유기산품 및 유기전환산품 인증표지

중국유기산품

중국유기전환산품

그림 14. 중국 유기산품 인증기관의 유기산품 인증 표지 예

COFCC

OFDC

OTRDC

○ 두 번째는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국가표준 GB/T 19630-2005 또는 자체의 유기표준[18]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인증 표지임. <그림 14>는 중국의 대표

18) 예를 들면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南京國環有機產品認證中心; OFDC)이 2009년 4월 제정한 [OFDC유기인증표준有機認證標准](2009.7.1 실시)이 있음. OFDC는 2003년 2월 14일 IFOAM의 인가를 획득했고, OFDC유기인증표준은 IFOAM의 기본 표준과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음.

적인 유기산품 인증기관인 중록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COFCC), 환경보호부 유기식품발전중심(OFDC), 중농품질인증중심(中農質量認證中心; OTRDC)의 인증표지임.

4. 비교 및 시사점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는 주요 친환경농업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인증 대상 측면에서 주요 친환경농업 선진국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만을 인증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유기식품(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모두 포함) 이외에 별도로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을 각각 정의하고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이외에 무농약농산물을 별도로 정의하여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은 모두 국내인증이지만 유기식품은 개념적으로나 인증제도상으로도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에 근접한 반면 녹색식품과 무공해농산물은 국제표준을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중국 국내표준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유기식품은 여타 국가들의 유기식품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기준의 친환경농식품인 반면, 녹색식품과 무공해농산물은 '중국적' 기준의 친환경농식품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법령체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을 실시하는 법령체계임.[19] 중국은 각각 정의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

19) 우리나라도 2012년 6월 1일 기존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친환경농어

기식품에 대해서 각각 독자적인 법령 및 표준체계를 갖추고 있음.

- 단, 중국은 주요 친환경농업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단일 법령체계하에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인증을 실시하며,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 인증도 모두 신선농산물과 가공품을 포괄하는 단일 법령체계임.

○ 셋째,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은 우리나라와 주요 친환경농업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증기관 인정(認定), 인증기관의 심사 및 인증,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의 역할이 엄격히 구별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음.

○ 넷째, 인증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은 친환경농업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단일 기관인 데 반해 중국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증 주무기관이 서로 다른 다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모두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무기관임.
- 반면 중국은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만 농업 관련 주무부처인 농업부의 AQSC와 OGFDC가 주무기관임. 유기식품은 농업부와 무관한 CNCA가 주무기관임. 이는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이 보다 폭넓은 유기산품(有機産品) 인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3년 6월 2일부터는 친환경농식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신선농산물 형태와 가공품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일원화된 법령체계를 갖추게 됨.

표 14. 주요 국가별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비교

국가	법적근거	적용범위	주무기관	인정(認定)기관	인증(認證)기관	표지(mark)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 가공품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중국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농산물, 가공품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AQSC)	AQSC	AQSC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표준	농산물, 가공품	농업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OGFDC)	OGFDC	OGFDC	A급 녹색식품 AA급 녹색식품
	유기산품 국가표준	농산물, 가공품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CNAS)	CNAS가 인정한 국가급 및 민간 인증기관	유기산품, 유기전환산품
IFOAM	IBS(기본규정),IAC(안정기준)	농산물, 가공품	–	IOAS	IOAS가 인정한 인증기관	유기농제품, 인증된유기, 유기
Codex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지침	농산물, 가공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정부, 민간인증기관	유기, 전환기
미국	OFPA(유기식품생산법) NOP(국가유기식품프로그램)	농산물, 가공품	농무부(USDA)	USDA-AMS	주정부, 민간인증기관	100%유기, 유기, 유기성분으로 만든
EU	ECC No. 2092/91	농산물, 가공품	유럽의회		EN45011자격요건 기관으로 대부분 민간인증기관	유기
일본	JAS(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 가공품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기술센터	민간인증기관	유기, 특별재배농산물(자발적 표시)
호주	유기 및 바이오다이나믹 제품에 대한 국가규정	농산물, 가공품	농림수산부	AQIS	민간인증기관	100%유기, 유기, 유기성분으로 만든

자료: 신용광 외. 200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R559. p.37 표4-1을 인용 및 재구성함.

○ 중국의 친환경농업 발전 경험에서도 친환경농업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정치제도로서의 사회주의와 경제제도로서의 시장경제가 결합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경제체제로부터 기인하는 '정부주도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발전 모델'로 규정될 수 있음.

○ 중국은 1990년대 초 농산물의 단기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이른바 '원바오(溫飽)'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음.

- 농업부는 1990년대 초부터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당시 녹색식품綠色食品으로 명명)'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식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2000년대 들어 WTO 가입 전후로는 농업부의 주도하에 '무공해식품행동계획(無公害食品行動計劃)'을 실시하는 가운데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증체계를 확립하였음.

○ 중국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에 대해 서로 상이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 무공해농산물은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2001년 4월 '무공해식품행동계획' 추진을 계기로 인증체계를 확립하였음. 농업생산의 규범화, 기본적 식품안전 보장, 일반적 소비자의 수요 충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무공해농산물의 인증도 전적으로 정부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익적 특성이 뚜렷함.
- 녹색식품은 농식품의 안전성과 생태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생산과정에서 식품안전 수준 제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충족, 시장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녹색식품의 인증은 이른바 '정부 추동, 시장 견인' 또는 '품질 인증과 브랜드 관리의 상호 결합'이라는 특성을 지님. 주요 소비 대상도 중·대규모 도시의 고소득 계층과 수출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유기식품은 생태환경보호에 중점을 두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인증은 유기농업 생산·경영체의 경영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운용되는 특성이 있음. 중국에서 유기식품이 지향하는 시장은 주로 수출시장임.

그림 15. 중국과 한국의 친환경농업 발전 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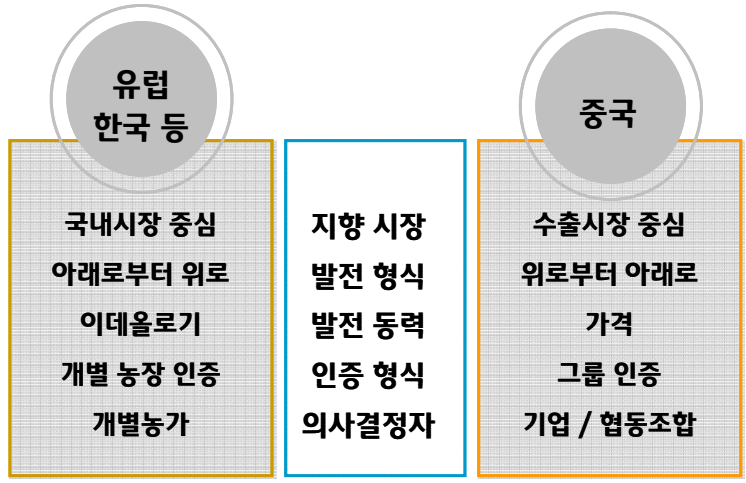

자료: Paull, J(2008b). p.269. 표1을 참조하여 재구성

○ 중국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가 되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농민을 조직화하여 생산, 가공, 유통을 일체화하는 '기업+농가' 유

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친환경농식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농식품의 생산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음.
- 중국에서 녹색식품 또는 유기식품 인증은 주로 농가가 결합된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생산, 가공, 유통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커다란 특징임.

○ 친환경농업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발전 경험과 비교하여 중국의 발전 경험으로부터 발전형식 측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발전동력 측면에서 가격(고부가가치), 지향 시장 측면에서 수출 시장, 인증 형식에서 다수의 농가가 결합된 생산기지 인증, 주요 의사결정자가 기업이라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음.

○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이 정부의 강력한 견인에 의해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경험은 향후 친환경농식품산업의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함. 특히 중국 정부가 2009년「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제정을 계기로 농식품 품질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친환경농식품 인증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규범적인 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 경제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고속성장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이 현재와 같은 기업주도의 인증과 생산, 유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중국 친환경농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는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개별농가 단위로 영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부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 중국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 목록

권오복·정정길. 2004.「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R4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2010.「중국 감 산업 동향」해외농업 시리즈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홍승지·한석호·김성우. 2004.「중국 산동성의 채소류 생산, 유통, 수출 현황과 전망」R4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송성환·박영구·진경무. 2006.「중국 김치·당근의 생산·유통·수출 현황과 전망」연구자료 D2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최세균·정대희. 2011.「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R64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박현태·김태곤. 2002.「중국의 사회·경제구조와 농업정책」D16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박현태·김태곤. 2002.「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생산구조」D16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박현태·김태곤. 2002.「중국 농업의 국제화와 발전과제」D16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종운·구기보. 2004.「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연구자료 D1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정정길·김배성·이현주·박근필. 2005.「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1/2차년도)」R5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정정길·김배성·이현주·리경호. 2006.「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2/2차년도)」R5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김연중·김윤식·전형진·리경호. 2007.「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방안」R5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전형진·리경호. 2008.「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경제·인문사

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03-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전형진·김윤식·리경호. 2008.「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C200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이대섭·윤형현. 2009.「한·중 FTA 협상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C200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최세균·전형진·정대희. 2010.「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중국의 FTA 사례분석」R62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약봉(牛若峰) 등 지음·지성태 번역. 2006.「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D2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이용선·전형진·주현정. 2008.「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비교분석」P1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창곤·조명기·정정길. 2002.「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에 관한 연구」R4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 외. 2008～2011.「중국농업동향」E09-2008-01～E09-2011-04, 제1권 제1호 ～ 제4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리경호. 2007.「중국농업동향」M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어명근·리경호. 2008.「중국의 주요 농산물 주산지 변동에 관한 연구」R5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 외. 2009.「중국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P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어명근·홍현표·장홍석·김보경·김진경. 2010.「중국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제도 분석 및 우리의 수출확대 방안」C2010-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권태진·남민지. 2010.「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 2011.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제도와 우리의 수출확대 방안"「농업전망2011(Ⅰ): 농업·농촌과 농식품산업: 새로운 시장과 기회」E04-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김영훈·남민지·권나경. 2011.「중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특성 및 시사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최세균·어명근·한석호·문한필·정대희·남민지·승준호. 2011.「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R6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어명근·남민지. 2011.「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R64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 편저. 2012.「중국의 농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1
전형진 편저. 2012.「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2
전형진 편저. 2012.「2012년도 중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2부록
전형진 편저. 2012.「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3
정정길·김정호·강정일. 2000.「중국 농업과 농정의 전개과정」D1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이현주. 2003.「중국농업연구 초록」D1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성명환. 2003.「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R4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이성귀. 2004.「중국의 중단립종 쌀 생산 수출 잠재력」P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어명근·전형진·정대희·최원목·정인교. 2010.「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R6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박근필·송성환. 2005.「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P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전형진·승준호. 2011.「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모형 구축 연구」R64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전형진·한재환. 2010.「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협력 방안」R6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시리즈 9권: 중국농업 4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8.
발 행 2012. 8.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전화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ISBN 978-89-6013-341-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